

2023학년도 김포외국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I 목적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고등학교 입학 전형의 공정성·합리성·타당성·다양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도를 높인다.

II 방침

1.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전형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및 제81조)
2.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경기도 외고·국제고 방식의 자기주도학습전형 방법을 전형에 활용한다.
3.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4.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은 별도 산출식에 따른다.
5. 이중지원은 절대 금하며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지도한다.
 -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후기학교 1개교를 지원할 수 있다.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합격한 경우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 전·후기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6. **2단계 대면 면접**을 기본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진 혹은 의심자에게는 별도 격리된 공간에서 원격 화상 면접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Ⅲ

입학전형 모집 인원 및 일정

1. 모집 인원

모집단위		영어과 (4학급)	일본어과 (2학급)	중국어과 (2학급)	합 계 (8학급)
정원 내	일반전형	80	40	40	160
	사회통합 전형	20	10	10	40
	합 계	100	50	50	200
정원 외	특례입학대상자전형	2	1	1	4
	(국가유공자자녀전형)	(3)	(1)	(2)	(6)

2.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1 단 계 전 형	원서접수	2022.12.09.(금) ~ 12.15.(목) 17:00
	서류제출	2022.12.09.(금) ~ 12.15.(목) 17:00
	합격자 발표	2022.12.19.(월) 이내
2 단 계 전 형	자기소개서 인터넷 제출	2022.12.20.(화) ~ 12.21.(수) 17:00
	면접	2022.12.29.(목)
	최종합격자발표	2022.12.31.(토) 이내

추가모집	서류접수 및 제출	2023.01.09.(월) ~ 01.11.(수) 16:00
	면접	2023.01.13.(금)
	합격자 발표	2023.01.16.(월) 이내

※ 위 일정은 추후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발표는 정해진 발표 날 이내 공지될 수 있음

IV 전형 관리

가) 전형 관리

- (1)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전형요항에 의한다.

나) 전형 방법

- (1) 입학전형위원회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한다.

※ 외국어고등학교는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다.

(가)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지원하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핵심인성 요소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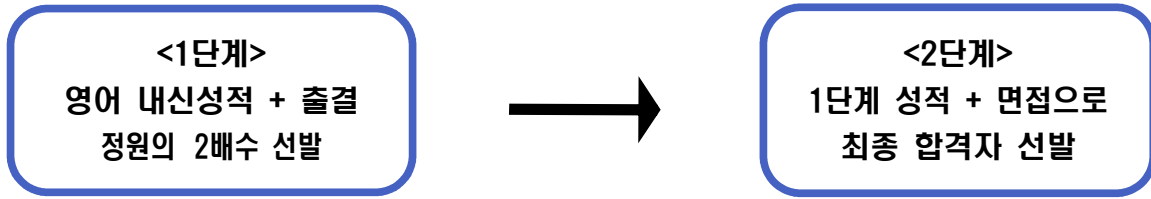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
-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선행학습 유발요인 배제

(다)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심사한다.

- 면접은 자기소개서의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자기주도학습 과정,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과 인성 영역(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실적,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실시

(라) 학교별 필기고사와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 면접·적성검사, 외국어 면접·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2외국어 활용능력에 대한 질문 등)은 금지한다.

(2)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1단계 : ‘영어 내신성적(160점) + 출결(감점)’ 로 모집 정원의 2배수 선발

-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식 :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시 자동 계산

영어 내신성적 = 중 2, 3학년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 영어 내신성적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한 성취도 수준 반영

- 1단계 동점자 발생 시 국어와 사회 교과 성취도 수준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반영함

3학년 2학기 국어→3학년 2학기 사회→3학년 1학기 국어→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2학년 2학기 사회→2학년 1학기 국어→2학년 1학기 사회

※ 사회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

- 중학교 2, 3학년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성취도 수준	A	B	C	D	E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경우, 성적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활용(예: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도 수준이 없을 경우 수, 우, 미, 양, 가를 활용하여 수는 A, 우는 B, 미는 C, 양은 D, 가는 E로 성취도 수준 부여

- 출결 상황 산출 방식

출결 = - [미인정결석 일수 × 0.1]

* 출결 감점은 최대 0.5점을 넘지 않는다.

- 외국인, 특례입학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출결을 반영하지 않는다.

(나) 2단계 :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 으로 선발

- 면접평가 점수 산출 방식

면접 = 자기주도학습 영역(공과 끼 영역) + 인성 영역

(다) 모집 단위는 경기도 내로 한다. (단, 타 시·도 중 2023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V 추가모집 전형 관리

1) 전형 관리

- 가) 전형 및 학과별 정원 미달 시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 나) 2023학년도 고입 전형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 다) 전형요항은 정시모집 시 승인 받은 것에 준하여 실시한다.

VI 사회통합전형

1. 사회통합전형의 지원자격

사회통합전형의 지원 자격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가.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 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⑥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선정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게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 ②의 경우 교육급여수급대상자 증명서, ⑤의 경우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나. 2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①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
- ② 조손가정 학생
- 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
-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다. 3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단,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21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⑦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등

3. 사회통합전형 단계별 전형 방법

가. 1단계(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

- ①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 ②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1.5배~2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3순위를 선발한다.

- ③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전형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한다. (일반전형 동일학과로 전환)

나. 2단계 :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아래의 방식을 준용한다.

- ①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60%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 ② 1순위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한다.

다.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 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4. 기타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